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,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

1.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에 대하여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치료는 '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, ECMO)의 인정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58호)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을 알려드리니,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감염예방·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1부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대한의사협회장,대한병원협회장

주무관 방희정 서기관 심은혜 보험급여과장 전결 01/31 이중규

협조자 보건사무관 이동우

시행 보험급여과-496 2020.01.31.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/ coldegg@korea.kr
전화 044-202-2736 전송 044-202-3960 / coldegg@korea.kr / 공개